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2026. 8.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신 문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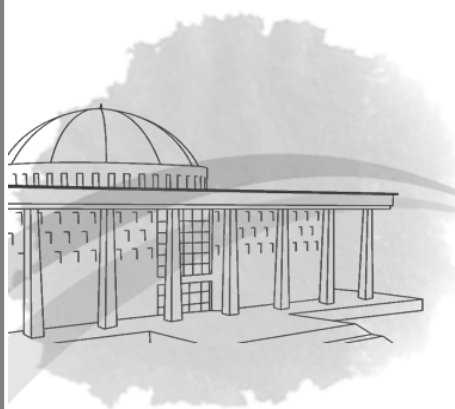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담당

구 분	입법조사관	연락처
국가교육위원회	김광호	6788-5186

목 차

I . 결산 개요	1
1. 총 괄	3
2. 일반회계	5
가. 세입결산	5
나. 세출결산	5
1) 총 괄	5
2) 인건비	7
3) 기본경비(총액대상)	8
4) 기본경비(총액비대상)	9
5) 주요사업비	10
6) 이체 · 이용 · 전용	11
7) 이월 및 불용	12
3.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재무제표 분석	14
가. 재정상태 분석(재정상태표)	14
나. 재정운영 분석(재정운영표)	15
다. 순자산변동 분석(순자산변동표)	16
II . 검토의견	18
1. 세출	20
가. 국가교육위원회	22
1)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22
(1) 교육연구센터 운영 사업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계약 기간을 회계연도 와 일치시키도록 조정 필요	24
(2) 국민참여위원회 회의 운영 부실	29
(3)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지연 문제	34

1. 결 산 개 요



1. 총 괄

-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1개 회계로 구성됨.
-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50,8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0%인 50,800원을 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	-	0.05	0.05	-	-	100
일반회계	-	-	0.05	0.05	-	-	100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1억 9,100만원
 이며, 이 중 82.1%인 91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3,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9억 7,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10,342	11,191	9,184	1,032	976	82.1
일 반 회 계	10,342	11,191	9,184	1,032	976	82.1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0,800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0.0%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	0.05	0.05	-	-	100.0
경상이전수입 (벌금, 과태료 등)	-	0.05	0.05	-	-	100.0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나. 세출결산

1) 총 괄

-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3억 4,200만원임. 예산현액은 111억 9,100만원으로 이 중 82.1%인 91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3,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7,6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2025년도	10,342	11,191	9,184	1,032	976
2024년도	10,279	11,419	9,382	849	1,188
증감률	0.6	△2.0	△2.1	21.5	△17.9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액 91억 8,400만원을 주요 내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9억 2,400만원, 기본경비 19억 3,000만원, 주요사업비 43억 3,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이용 이체액				
계	10,342	849	-	-	-	11,191	9,184	1,032	976
인건비	3,262	-	-	-	-	3,262	2,924	-	338
기본경비 (총액대상)	546	-	-	-	-	546	393	11	142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917	133	-	-	-	2,050	1,537	331	182
주요 사업비	4,617	716	-	-	-	5,333	4,330	690	313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 인건비

- 2025회계연도 인건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32억 6,200만원으로, 이 중 89.6%인 29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3,800만원은 불용처리함.

< 2025회계연도 인건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등증 감(△)액	이용 이체액				
합 계	3,262	-	-	-	-	3,262	2,924	-	338
인건비(110)	3,262	-	-	-	-	3,262	2,924	-	338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3) 기본경비(총액대상)

- 2025회계연도 기본경비(총액대상)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5억 4,600만원으로, 이 중 72.0%인 3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2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2025회계연도 기본경비(총액대상)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이용 이체액				
합계	546	-	-	-	-	546	393	11	142
인건비(110)	272	-	-	-	-	272	186	-	85
운영비(210)	137	-	-	-	-	137	99	11	26
직무수행경비(250)	85	-	-	-	-	85	76	-	9
민간이전(320)	53	-	-	-	-	53	31	-	22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기본경비(총액대상) 이월액 1,100만원은 운영비에서 발생하였으며, 관련 지침*에 따라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를 이월한 것임.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기본경비(총액대상) 불용액 1억 4,200만원은 운영비, 인건비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주된 사유는 집행 잔액임.

4) 기본경비(총액비대상)

- 2025회계연도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9억 1,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3,300만원을 포함한 20억 5,000만원으로, 이 중 75.0%인 15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100만원을 이월하여 1억 8,2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2025회계연도 기본경비(총액비대상)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이용 이체액				
합계	1,917	133	-	-	-	2,050	1,537	331	182
운영비(210)	1,479	19	-	-	-	1,498	1,114	306	78
여비(220)	113	0	-	-	-	113	33	22	58
업무추진비(240)	67	0	-	-	-	67	65	2	-
연구용역비(260)	50	69	-	-	-	119	73	0	46
유형자산(430)	208	46	-	-	-	254	252	1	-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이월액 3억 3,100만원은 운영비, 여비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중 일반용역비는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한 것임.
- 기본경비(총액비대상) 불용액 1억 8,200만원은 운영비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주된 사유는 집행 잔액임.

5) 주요사업비

- 주요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46억 1,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억 1,600만원을 포함한 53억 3,300만원으로, 이 중 81.2%인 43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1,3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다음연도 이월액 6억 9,000만원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 5억 4,100만원, 연구용역비 1억 4,900만원으로, 회계연도와 계약기간의 불일치에 따른 연구센터 용역비 및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임.
- 불용액 3억 1,300만원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 2억 2,000만원, 여비 5,9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연구용역비 2,700만원으로 그 주된 사유는 집행잔액임.

< 2025회계연도 주요사업비(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 액	이용 이체액				
합계	4,617	716	-	-	-	5,333	4,330	690	313
운영비(210)	3,712	420	-	-	-	4,132	3,371	541	220
여비(220)	101	0	-	-	-	101	42	0	59
업무추진비(240)	44	0	-	-	-	44	37	0	7
연구용역비(260)	760	296	-	-	-	1,056	880	149	27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6) 이체 · 이용 · 전용

- 국가교육위원회는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체 및 이·전용 실적이 없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변동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감(A-B)	증감률(%)
이 체	-	-	-	-
이 용	-	-	-	-
전 용	-	-	-	-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7) 이월 및 불용

-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10억 3,200만원 이월과 9억 7,6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 및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감(A-B)	증감률(%)
이 월	1,032	849	183	21.5
불 용	976	1,188	△212	△17.9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이월의 주요 사유는 연구센터 용역 사업의 실제 사업기간과 회계연도의 불일치에 따른 사고이월 및 정책연구용역의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로, 주요 이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주요 이월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 사유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11	- 운영비 집행잔액 이월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331	- 집행잔액 및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690	- 연구센터용역(510백만원) 계약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사고이월 - 일반용역(31백만원), 정책연구(149백만원)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계	1,032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불용의 주요 사유는 인건비, 운영비 및 주요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주요 불용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주요 불용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불용액	불용 사유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338	인건비 집행잔액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142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잔액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82	운영비 등 집행잔액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313	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
계	976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3.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재무제표 분석

가. 재정상태 분석(재정상태표)

- 국가교육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자산은 전기 대비 9,500만원이 증가한 31억 5,800만원으로, 부채는 0원임.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31억 5,8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 산	3,158	3,063	95	3.1
부 채	-	-	-	-
순 자 산	3,158	3,063	95	3.1

- 자산은 일반유형자산이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해 전기 대비 1억 2,900만원 증가하였고, 감가상각으로 인해 2억 200만원 감소하였으며, 무형자산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포털 구축 등으로 인해 전기 대비 3억 4,200만원 증가하였음. 기타자산은 선급금의 감소 등으로 인해 1억 7,400만원 감소함.
- 2025회계연도 말 국가교육위원회의 부채는 0원임.

나. 재정운영 분석(재정운영표)

- 국가교육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 대비 8억 6,300만원 증가한 96억 400만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도 동일함.
- 2025년도 재정사업 운영에 따른 직접비용인 프로그램 순 원가는 96억 400만원이며, 2025년도 관리운영비 등은 없음.
-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은 없음.

<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금액 (C=A-B)	비율(C/B)
I. 프로그램순원가	9,604	8,741	863	9.9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	-	-	-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9,604	8,741	863	9.9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9,604	8,741	863	9.9

다. 순자산변동 분석(순자산변동표)

- 국가교육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기말 순자산은 전기 대비 9,500만원 증가한 31억 5,800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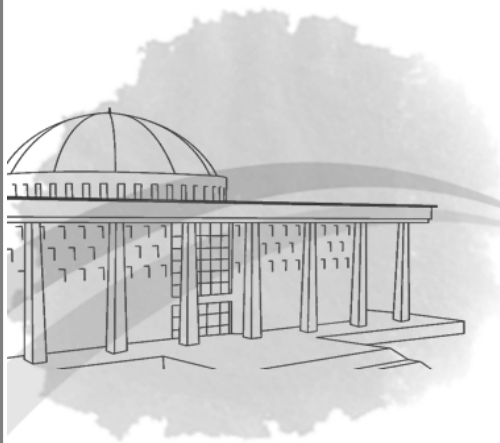
<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순자산변동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기초순자산	3,063	1,969	1,094	55.6
II. 재정운영결과	9,604	8,741	863	9.9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699	9,835	(136)	(1.4)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 (I-II+III+IV)	3,158	3,063	95	3.1

-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8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기 대비 1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의 세부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재원의 조달은 국고수입이 91억 8,4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억 9,800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이전수익이 6,200만원 증가함에 따라 총 1억 3,600만원 감소함.
- 조정항목의 증감은 없음.

II. 검토 의견



1. 세 출

가. 국가교육위원회

<일반회계>

1)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¹⁾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센터 운영 사업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계약 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도록 검토가 필요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위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국가교육위원회의 1기 국민참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2기 구성까지 10개월 동안 국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는바,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국민참여위원회 구성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법정회의 등 운영”,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 문의: 02-6788-5186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53억 3,300만원으로, 43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1,3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81.2%임.

<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617	-	5,333 ²⁾	4,330	690	313	81.2
○ 법정 회의 등 운영	1,133	10	1,143	1,015	31	97	88.8
○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2,467	-	3,183 ³⁾	2,498	659	26	78.5
○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477	△10	467	451	-	16	96.6
○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540	-	540	367	-	173	68.0

자료 :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자료 편집

2) 내역사업 중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7억 1,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3) 전년도 이월액 7억 1,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나) 검토의견

(1) 교육연구센터 운영 사업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계약 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도록 조정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사업”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국가교육과정 관련 연구 센터 운영”과 “정책연구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국가교육과정 관련 연구 센터 운영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 제21조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와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로 각각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정되어 운영되었음.
-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확정 및 동 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지원 등 연구 수행, 발전계획 이행 및 성과관리체계 연구 및 지원, 국내·외 교육개혁 동향 조사·분석, 해외교육 분야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연구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25년 동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이월액 2억 1,0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2억 1,000만원으로 이 중 9억 원 1,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이월함으로써 집행률은 75.2%였음.

-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는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관계 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의 업무 수행하고 있고,

2025년 동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7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이월액 2억 1,0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9억 1,000만원으로 이 중 7억원을 집행하고 2억 1,000만원을 이월함으로써 집행률은 76.9%였음.

< 2025년도 교육연구센터 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2,467	-	3,183 ⁵⁾	2,498	659	26	78.5
-교육연구센터 운영	1,700	-	2,120 ⁶⁾	1,610	510	0	75.9
·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1,000	-	1,210	910	300	0	75.2
·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700	-	910	700	210	0	76.9

자료 :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자료 편집

5)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7억 1,600만원(교육연구센터 운영 4억 2,000만원, 정책연구 2억 9,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6)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및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의 전년도 이월액 각각 2억 1,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⁷⁾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센터 운영 사업을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⁸⁾, 2023년 최초 지정⁹⁾ 기간에 맞춰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의 경우 동년 8월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의 경우 동년 4월에 계약이 체결된 이래로 국가의 회계연도와 계약기간이 불일치하게 운영되고 있음.

[교육연구센터 용역계약 기간]

연도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1기	2023	2023.8.9.~2024.4.5.	2023.4.14.~2024.5.13.
	2024	(당초) 2024.4.5.~2025.4.4. (변경) 2024.4.5.~2025.7.31.	2024.5.14.~2025.4.13.
2기	2025	(당초) 2025.4.22.~2026.4.21. (변경) 2025.4.22.~2026.7.31.	2025.4.14.~2026.4.30.

자료 : 국가교육위원회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예산의 이월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7)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8)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에 따라 외부기관을 연구센터로 지정 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9)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 '23년 7월 센터 지정(안) 의결,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 '23년 3월 센터 지정(안) 의결

조속히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⁰⁾, 교육연구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국가의 회계연도와 사업을 위한 계약기간이 불일치하여 예산의 이월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 교육연구센터 운영 사업 이월 현황(2023년~2025년) >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5	1,700	420	2,120	1,610	510	0	75.9
2024	1,400	300	1,700	1,280	420	0	75.3
2023	1,000	0	1,000	700	300	0	70.0

자료 :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자료 편집

□ 또한 교육연구센터의 경우 국회의 결산 심사 시점¹¹⁾(5월말부터 8월말까지)에 해당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결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결산에 제약이 있음.¹²⁾

□ 계약 기간을 국가회계연도와 일치시키는 경우 정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여 결산 및 회계처리가 명확해지고, 이를 바탕

10)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6p

11) 「국가재정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2)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는 2025년도 사업이 2026년 7월 31일에 종료되므로, 7월말 기준 결과보고서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미제출 상태임.

으로 기관 내 자체평가와 외부 성과평가 및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심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교육연구센터의 경우에도 정부의 연간 업무 계획에 맞춰 교육 연구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교육연구센터 운영 사업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계약 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참여위원회 회의 운영 부실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국민의견 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은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설계·추진하고, 국민의견 수렴·조정 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숙의·공론화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연간 성과 공유 등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는 사업임.
- 이 중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수립 등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¹³⁾,

국가교육위원회가 ①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③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 소관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의견

1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¹⁴⁾

-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2023.6.23.~2025.6.22)는 시행령 제17조¹⁵⁾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다양한 집단 중 499명의 위원(위원장 포함 500명)으로 구성되었음.

<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직능		인원수	비율
공개모집	학생·청년	80명	16.0%
	학부모	101명	20.2%
	교육관계자	128명	25.7%
	일반국민	66명	13.2%
지방자치단체 추천		124명	24.9%
계		499명	100%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 1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2.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는 2025년에 다음과 같이 8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각 회의별 참여 위원의 수를 살펴보면 최소 43명, 최대 150명으로 평균 참석위원은 120명¹⁶⁾으로 집계된바, 전체 위원이 499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율이 낮은 상황임.

< 2025년 국민참여위원회 회의 실적 >

일 자	주 제	참석인원
4.28.(월) 14:00~16:30	(토론회)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합리성 제고	150
4.29.(화) 14:00~16:30		145
5.7.(수) 14:00~16:30	(토론회) 사교육 과열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134
5.8.(목) 14:00~16:30		132
5.12.(월) 14:00~17:00	(토론회) 지역의 특수성·교육수요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학교 운영, 적정 학급당 학생 수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역별 교육여건 조성	114
5.14(수) 14:00~17:00		108
6.18.(수) 14:00~16:00	(토론회) 1기 활동 소감 공유, 2기 운영을 위한 제언	43
6.25.(수) 14:00~17:00	(토론회) 1기 활동 내용 공유, 우수 위원 시상, 활동 마무리	130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16) 전체 위원 499명의 24%에 해당함.

- 또한, 위원별 회의 참석현황을 살펴보면 499명의 위원 중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305명으로 전체의 61.1%에 달하고, 그 외에도 참석 횟수가 3회 이하인 위원이 370명(74.1%)이었음.

< 위원별 회의 참여 현황 >

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계
명	305	19	40	6	27	10	42	29	22	500
학생 및 청년	53	3	6	0	6	1	10	1	1	81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 특히,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 및 청년의 경우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53명으로 전체의 65.4%에 달하고, 참석 횟수가 3회 이하인 위원도 62명(76.5%)으로 타 범주의 위원보다 회의 참여율이 더 낮았음.

- 국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은 비상근이므로 각자의 생업과 학업 등의 사유로 회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2025년 국민참여위원회 회의 실적을 보면 평일 일과시간에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회의 일정을 평일 저녁 또는 주말로 계획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2026년 4월 23일부터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는바,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여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지연 문제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6조제1항은 국민참여위원회를 위원회 소속의 법정 기구¹⁷⁾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참여위원회 구성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함.
- 그러나,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¹⁸⁾으로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는 2023년 6월 23일에 구성되어 2025년 6월 22일 활동이 종료되었으나, 제2기의 경우 2026년 4월 23일에 구성되었는바 제1기 활동 종료 이후 제2기 구성까지 10개월 동안 국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음.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하여,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¹⁹⁾(이하 “전문위원회”)’를 통한 국민참여위원

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1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9) 국가교육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2025년 전문위원회 구성 현황(26.5.28. 기준)

구분	위촉일	임기	위원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25.1.1.	2025.1.1.~2026.12.31.	21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25.6.30.	2025.6.30.~2027.6.29.	45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25.3.1.	2025.3.1.~2027.2.28.	17

자료 : 국가교육위원회 제공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회 개선방안 논의와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마련('26.1월)함에 따라 구성이 늦어졌다고 설명함.

□ 그러나, 전문위원회 논의 사항을 보면 제2차 회의('25.4.17.)에서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의 참여율 저조 및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이후에는 국민참여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 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국민참여배심위원회 도입이 주된 논의사항이었음²⁰⁾.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출한 “국민참여위원회 제도개선 정책연구

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0)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의 국민참여위원회 개선방안 논의 내용(국가교육위원회 제출)

- 제2차 회의('25.4.17.) - 1/3 정도의 위원들만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 보다 많은 위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제4차 회의('25.6.19.) - 500명 규모로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김영호 의원 법안)은 다양한 속의 절차 진행과 비용 측면 등에서 면밀한 검토 필요
- 제5차 회의('25.7.17.) -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이 부결한 사안을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다시 결정하는 구조는 민주적 정당성·절차적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성 확보 곤란
 - 교육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안건을 소수 배심원단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표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 우려
 - 배심원단이 부결된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권한 약화 및 또 다른 권력기관화 우려 존재
- 제6차 회의('25.9.18.) - 배심 기능 검토 이외에도 속의 기능 활성화, 운영과정 합리화 등 거시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여 내·외부 의견 종합 필요
 - 전문위원회와 국민참여위원회 간 역할과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국민의견 수렴·조정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
- 제7차 회의('25.10.16.) - 국민참여위원회에 배심기능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국민 참여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필요
- 제8차 회의('25.11.20.) - 배심제도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판단을 중시하기 위해 사법체계에 도입된 것으로, 교육 분야 도입의 적절성과 실행방안 검토 필요
- 제9차 회의('25.12.17.) - 의견수렴·조정 시 국민참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추후 실적·경험 축적 및 의견수렴·조정 예산 확대 등 방식 다각화 필요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배심제도 도입 검토”는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운영평가” 및 “국민참여위원회 개편 방안(안)”과 별도 항목으로 보고되었고,

국민참여위원회 개편 방안(안)에서도 숙의 방법론의 일환으로 배심제도 적용이 검토된 것으로 보이나, 주요 개편 방안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²¹⁾

- 따라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이 필수적 사항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 개편 방안을 위한 논의 및 정책연구용역을 배심 기능 논의와 별도로 추진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

21)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① 1기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평가 (생략)

② 배심제도 도입 검토 (생략)

③ 국민참여위원회 개편 방안(안)

- (운영체계 개편) 직능별·지역별 분과를 구성하여 관심도가 높은 의제에 대해 논의하여 참여율 제고
 - 정기 회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논의안건 발굴 및 상향식 의제 제안
- (학습 기회 제공) 위원들에게 교육정책 및 숙의공론화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 위촉 시 기본 교육, 워크숍 등 정기 학습, 안전별 정보 제공 등
- (전문위 연계)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 통계 분석, 찬반 논거 정리 등 정보 자료집 작성·제공, 퍼실리테이터 교육 및 국민참여위원회의 결과 분석·제언
- (다양한 방법론 적용) 교육 쟁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숙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책의 유연성 발휘 필요
 - 시민의회, 배심제도, 합의회의 등 의제의 전문성, 기간, 갈등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숙의방식 적용
- (환류체계 강화) 다층적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참여위원회 활동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고
 - 단기 안전의 경우 전체회의 논의 결과 즉각 환류 및 중·장기 안전의 경우 정책 반영과정 단계별 공유 및 연간 보고 실시 등

-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제3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